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9
----------	------

발의연월일 : 2016. 8. 3.

발의자 : 이철우 · 최도자 · 윤한홍

김성태 · 엄용수 · 유승민

안호영 · 황영철 · 박명재

황주홍 · 민홍철 · 심재권

박덕흠 · 윤재옥 · 이만희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육성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현행 육성계획은 중장기 발전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단년도 계획으로 수립·시행되고 있어 지원사업이 획일화되고 차별성이 부족하며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추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9조의2 신설 및 제2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6.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 인력확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매년”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u> ① 정부는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중소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기술 향상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에 관

